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건설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1015호, 2011.8.4) 동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3583호, 2012.2.2)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국토해양부령 제397호, 2011.11.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0250호, 2010.4.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036호, 2011.8.4) 동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동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안전부령 제282호, 2012.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1361호, 2012.2.22)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동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해양부령 제266호, 2010.7.2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 · 수리 · 판매 · 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11190호, 2012.1.17)
유보내용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 조(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2.18)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 · 정비 · 해체 및 재활용 서
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
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 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
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유통 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9932호, 2010.1.18)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23349호, 2011.12.6)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주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법률 제11134호, 2011.12.31) 동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3598호, 2012.2.2) 국세청 고시 제2010-13호(2010.4.1) 및 제2011-24호(2011.12.3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10801호, 2011.6.15)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부록1(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20호, 2012.4.26)
유보내용	<u>투자</u>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2)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1102호, 2011.11.2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124호, 2012.5.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0788호, 2011.6.7)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6조 및 제7조(대통령령 제23248호, 2011.10.25)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제4조 및 제13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8호, 2011.9.28) 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10564호, 2011.4.7)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보건복지부령 제85호, 2011.11.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0219호, 2010.3.31)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보건복지부령 제48호, 2011.4.1) 식품위생법 제24조,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0787호, 2011.6.7)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23619호, 2012.2.3)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 36조(별표14)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2012.5.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0786호, 2011.6.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매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의약품 소매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0788호, 2011.6.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약품 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약국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조치	<p>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법률 제10722호, 2011.5.24)</p> <p>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0580호, 2011.4.12)</p> <p>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10599호, 2011.4.14)</p> <p>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9772호, 2009.6.9)</p> <p>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9391호, 2009.1.3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철도 운송서비스 사업을 하는 인이 합작투자 또는 운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분야	운송서비스 –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는 제외하는 도로여객운송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동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3743호, 2012.4.20)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해양부령 제425호, 2011.12.30)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11060호, 2011.9.16) 동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해양부령 제208호, 2010.1.1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택시와 정기여객운송서비스는 제외하는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10219호, 2010.3.31)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도선법 제6조(법률 제10801호, 2011.6.15)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9707호, 2009.5.2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와 해운중개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치	항공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29조 및 제132조(법률 제11244호, 2012.1.26)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조, 제278조, 제278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국토해양부령 제436호, 2012.1.18)
유보내용	<p><u>투자</u></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국내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연금된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p>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인은 해당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부정기 항공운송 서비스는 지점 간 운항 서비스, 관광비행 서비스 및 전세 비행기 서비스를 포함한다.</p>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사용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11244호, 2012.1.26)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2(국토해양부령 제436호, 2012.1.18)

유보내용

투자

항공기 사용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항공순찰 및 관측,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및 헬리콥터를 이용한 별채를 포함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국토해양부령 제425호, 2011.12.30)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10790호, 2011.6.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해양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кури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11116호, 2012.12.2) 동법 시행규칙 제306조(국토해양부령 제436호, 2012.1.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11064호, 2011.9.16)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및 제41조의2(국토해양부령 제430호, 2011.12.3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p>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p>
조치	<p>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 (법률 제10656호, 2011.5.19)</p> <p>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8.28)</p> <p>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0393호, 2010.7.23)</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p> <p>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p>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p> <p>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는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 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p> <p>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 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p>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법률 제10656호, 2011.5.19)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법률 제10656호, 2011.5.19)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3조(법률 제10139호, 2010.3.17)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법률 제10580호, 2011.4.12) 동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3086호, 2011.8.19)
	동법 시행규칙 제4조(국토해양부령 제399호, 2011.11.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10136호, 2010.3.17)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리스·임대 그리고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0564호, 2011.4.7)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보건복지부령 제85호, 2011.11.2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대여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동법 시행규칙 제60조(국토해양부령 제425호, 2011.12.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과학조사 서비스와 해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8852호, 2008.2.2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0524호, 2011.4.4)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p>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p>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34조, 제45조, 제58조 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10922호, 2011.7.25)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법률 제8920호, 2008.3.21)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1154호, 2012.1.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 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 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 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 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 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 준수되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법률 제10321호, 2010.5.25)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공인노무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10706호, 2011.5.2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 (법률 제10812호, 2011.6.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감사 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209호, 2012.1.26)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3724호, 2012.4.15)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283호, 2012.4.19)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및 제9조(법률 제10570호, 2011.4.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사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해 통관업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10968호, 2011.7.25)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대통령령 제23845호, 2012.6.7)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136조의8(고용노동부령 제47호, 2012.1.26)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만이 작업 공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평가 및 지침 제공 등과 같은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10719호, 2011.5.24)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4.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법률 제11235호, 2012.1.26)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10771호, 2011.6.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10719호, 2011.5.24) 동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3299호, 2011.11.16)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제28조(법률 제11056호, 2011.9.16) 동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8조(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동법 시행규칙 제48조(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3.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법률 제11062호, 2011.9.16)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10615호, 2011.4.28) 온천법 제7조(법률 제10732호, 2011.5.3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11036호, 2011.8.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10856호, 2011.7.1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법률 제10466호, 2011.3.29)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10339호, 2010.6.4)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55호, 2012.6.5)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1024호, 2011.8.4) 동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법률 제11188호, 2012.1.17)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4(국토해양부령 465호, 2012.5.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9453호, 2009.2.6)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09년 4월 17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에 의해 32개 사업으로 한

정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자, 한국해운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만이 선원인력 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상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분야	조사 및 경비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9579호, 2009.4.1)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동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5.3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조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10.3.17)	제12조(법률 제10108호,	
	동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22783호, 2011.3.30)		
	동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 2010.6.2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종류의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가.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또는 나. 소설 · 만화 · 사진집 · 화보집 및 잡지		
	국내간행물 배포자는 배포 후에 필요 시 사후 심의의 대상이 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법률 제11244호, 2012.1.26)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국토해양부령 제436호, 2012.1.1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11212호, 2012.1.26) 동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3650호, 2012.3.2)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11216호, 2012.1.26) 동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22971호, 2011.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21709호, 2009.9.3)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 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II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의료인 · 약사 · 수의사 · 한약사 · 의료기사 및 유아 · 초등 및 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11272호, 2012.2.1)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23839호, 2012.6.5)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고용노동부령 제57호, 2012.6.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수의사법 제17조(법률 제11354호, 2012.2.22)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법률 제11005호, 2011.8.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수의 서비스 또는 수산질병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법률 제10615호, 2011.4.28)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10551호, 2011.4.5)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10599호, 2011.4.14)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법률 제11256호, 2012.2.1)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법률 제9037호, 2008.3.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법률 제11014호, 2011.8.4)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10615호, 2011.4.28) 동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조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10723호, 2011.5.25)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23317호, 2011.11.25)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2011.11.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법무부령 제764호, 2012.2.2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0585호, 2011.4.14)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1)
	전파법 제20조(법률 제11037호, 2011.8.4)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기자 또는 지국의 한국 내 설립은 기자 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자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조치	약사법 제42조(법률 제10788호, 2011.6.7)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보건복지부령 제127호, 2012.6.15)
유보내용	<u>투자</u>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치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9098호, 2008.6.5)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대통령령 제23351호, 2011.12.6)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한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p>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p> <p>나.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p> <p>다.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일로부터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0932호, 2011.7.25)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11005호, 2011.8.4) 종자산업법 제142조(법률 제10842호, 2011.7.14)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0219호, 2010.3.31)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0948호, 2011.7.2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10801호, 2011.6.15)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부록1(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20호, 2012.4.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10522호, 2011.3.3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및 제20조의2(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 2011.12.31)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2조(내국민 대우) 및 제9.4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발전, 송전 ·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¹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040호, 2011.8.4)
	동법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23496호, 2012.1.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0801호, 2011.6.15)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부록 1(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20호, 2012.4.26)
	기획재정부 고시(제2000-17호, 2000.9.28.)
	금융투자업 규정 제6-2편(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17호, 2009.2.4)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p>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¹ 부속서 II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일곱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²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9401호, 2009.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040호, 2011.8.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0801호, 2011.6.15)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09.3.27)
유보내용	<u>투자</u>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² 부속서Ⅱ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일곱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시장접근(제9.4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0219호, 2010.3.31) 동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2781호, 2011.3.30)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